나고야시

국민보 호에 관해서 소개합니다.

– 나고야시에서 안내 –

나고야시는 국민보호법에 기초하여 2007년에 나고야시 국민보호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국민보호라 함은 만약 일본 국내에서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테러가 일어날 것 같은 때, 또는 일어난 때, 국가, 지방공공단체,관계기관이 연대하여 피난주민의 유도나 원조 등을 하여, 주민 여러분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계획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주민 여러분이 피난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보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민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보다 안전한 장소로 피난 (※) 하시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나고야시에서는 만약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테러가 일어날 것 같은 때, 또는 일어난 때, 다음의 요령으로 주민 여러분의 피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보호 피난은 가까운 초, 중학교 등으로 피난하는 방재의 경우와는 달리, 시 지역을 넘는 피난이나 가까운 건물로 옥내피난 등이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난까지의흐름도

나고야시에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테러가 일어날 것 같은 때, 또는 일어난 때 → 스텝 ① 경보나 피난에 관한 정보전달 → 스텝 ② 피난

스텝 ① 경보나 피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테러가 일어날 것 같은 때, 또는 일어난 때에는 국가나 현에서 경보나 피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경보라 함은…무력공격이 가까워지거나, 또는 실 제로 발생한 것 등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피난에 관한 정보라 함은…피난이 필요한 지역이나 피난처가 될 지역 등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 다 .

주민여러분께전달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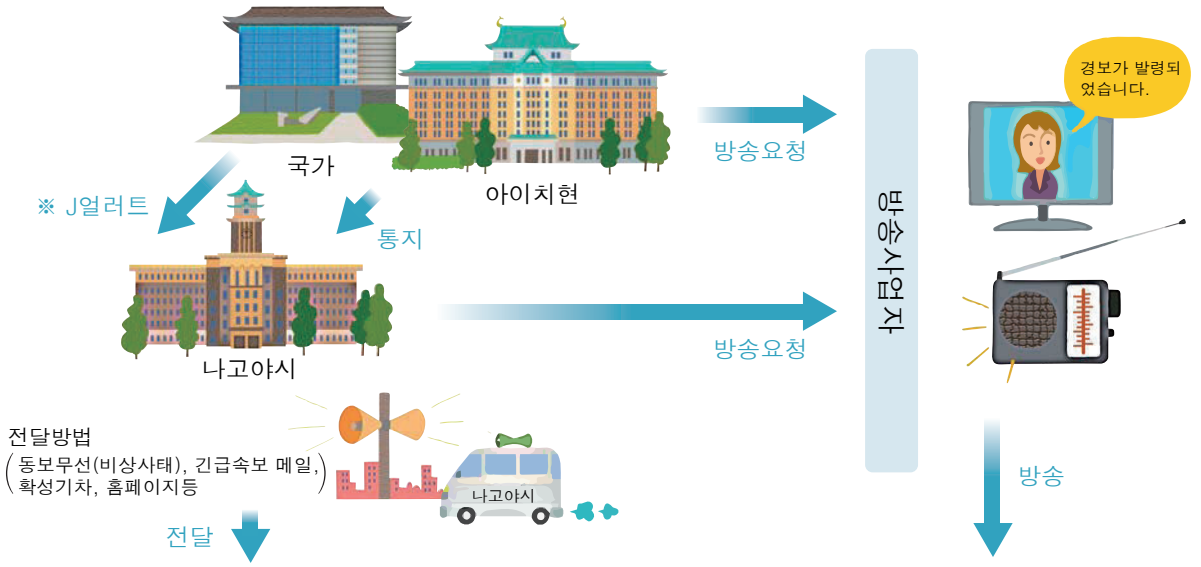

주민 : 텔레비전 등으로 정보수집, 피난준비

※J얼러트란, 국가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 정보, 대쓰나미 정보, 긴급지진 속보 등의 긴급정보를 주민에게 즉시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긴급정보가 내각관방이나 기상청에서 소방청을 경유하여 송신되는 것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방재행정 무선이나 긴급속보 메일 등이 자동적으로 기동·전송됩니다.

스텝 ② 피난하는 데는 !

피난은 다음의 3구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그 지시에 따라서 피난해 주십시오.

케이스 1 옥내피난
(위험이 바로 눈앞 에 다가온 때)

· 옥내에 있을 경우는 도어나 창을 닫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옥외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옥외에 있을 경우는 가까이 있는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가 등으로 피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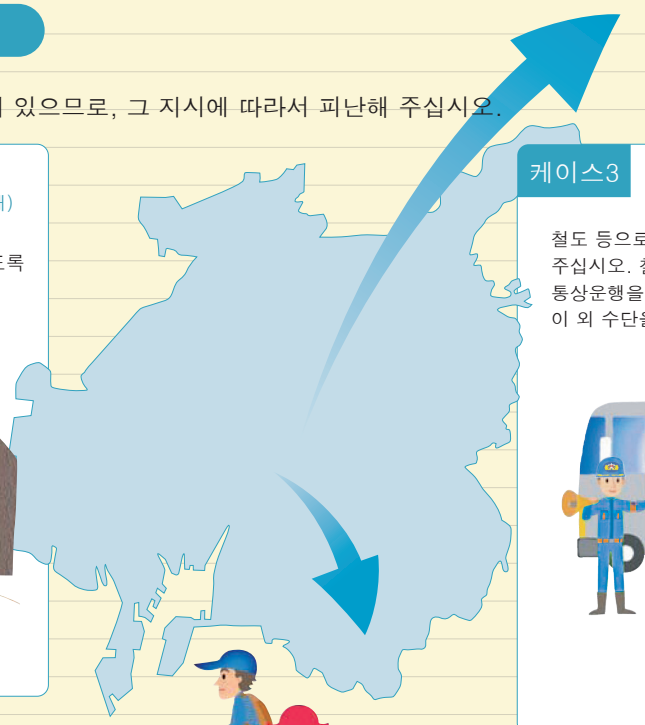

케이스 2 시내 피난시설로 대피

걷거나 자전거 등, 차 이외 방법으로 나고야시가 알린 피난시설로 피난을 해주십시오.

케이스3 시지역외 피난시설로 피난

철도 등으로 지시된 피난시설 로 피난해 주십시오. 철도역까 지 이동은 걷거나 통상운행을 하는 시버스 ·지하철 등 차 이 외 수단을 활용해 주십시오.

주 : 차는 이용하지 않는다 ! 차를 이용하면 정체가 일어 나 피난할 수 없게 됩니다 !

피난처에서의 피난생활을 위하여

피난시설을 관리하는 지방공공단체가 피난해 온 분들에게 식품 이나 의료 등의 구원을 합니다. 또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관계 기관과 연대하여 피난해 온 분들의 안부정보를 수집하여, 뿔뿔이 흩어진 가족 등으로부터 문의에 회답합니다.

나고야시에서 드리는 부탁말씀

– 주민 여러분께 협력을 부탁합니다 –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해와 마찬가지로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테러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 여러분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피난할 때나 피난처에서는 인근지역이나 피난처의 주민 등이 서로 도와 행동하도록 협력을 부탁합니다.

문의처 국민보호계획에 관한 것 방재위기관리국 위기관리기획실

TEL.052-972-3523 FAX.052-962-4030

전자메일 : a3523@bosaikikikanri.city.nagoya.lg.jp

국민보호대응에 관한 것 방재위기관리국 위기대책실

TEL.052-972-3522 FAX.052-962-4030

전자메일 : a3522@bosaikikikanri.city.nagoya.lg.jp

이 마크는 국민보호를 위해 조치를 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식별하기 위한 국제적인 특수표장입니다.